

직원 신규 임용 시행세칙 제정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직원인사규정 제7조(신규채용)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기준)

- ①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 결격 사유(국가공무원법 제 33조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②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③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,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 별도의 경력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(채용절차) 직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
- 1. 채용인원 및 채용직무 결정: 임명권자 채용 동의
- 2. 채용공고: 홈페이지 및 구인사이트 공개채용 공고
- 3. 지원자 접수
- 4.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: 직원인사위원회, 필요시 2차 심층면접 진행
- 5. 합격자 발표
- 6.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
- 7. 임용 확정: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 임용

제4조(심사방법 및 심사기준) 직원 채용에 따른 세부 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서류심사: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심사하며, 필요시 해당 부처장이 배석할 수 있다.
- 2. 면접심사: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 직원인사위원회의 면접으로 실시하며, 심사표(별표 1)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. 필요시 해당 부처장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배석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